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6. 12. 13.
시민보사위원회

1. 審 査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12월 10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6년 12월 11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46회 정기회 제7차 시민보사위원회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시민생활국장 김종박)

가. 제안이유

- 현재 숙박업의 21종 영업허가(신고) 수수료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로 징수하고 있으나, '96. 8. 20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97. 1. 1부터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로 징수하도록 변경되어 공중위생영업 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중위생법 영업허가 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 대상 및 금액을 정함(안 제2조)
- 공중위생법 영업허가 신고 등에 징수하는 수수료는 당해 자치구 수입증지로 납부함.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 유 재한)

공중위생법(숙박업의 21종)의 영업허가 또는 신고처리를 지금까지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수수료)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증지로 처리하여 오던 것을 '96. 8월 20일 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므로 우리구의 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정하는 안입니다.

공중위생법 제40조(수수료)는 같은법 1호-5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징수를 법 제41조(위임 및 위탁등)에서 법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방법과 영업이나 제조업의 허가 또는 신고, 변경신고, 양수에 의한 신고 면허수수료등 법제40조 1호-5호까지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며,

수수료의 반환은 이미 납부한 것에 대하여 반환치 않는 규정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감면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는 조례안은 전문7조로 제정되는 것이며,

서울시 25개 구청의 공중위생법 영업허가·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를 통일시켜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도록 하는 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며,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법근거 또는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관련법 근거와 업종별 수수료 금액은 뒷면 별표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제안설명한 수수료 조정에 관한 검토의견의 제1안, 제2안과 제3안은 수수료를 말하며, 제2안은 87~95년까지 도매물가 상승율의 평균치를 계산한 것으로 24.7%의 상승율 적용이며, 제3안은 '87~'95년까지의 소비자 물가의 상승율 평균치 53.8%를 적용한 수수료로서 주민에게

과다한 수수료 부담을 주지 않고, 또 서울시 산하 전구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1안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審 査 結 果 : 수정 안 의 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
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996. 12. 13
시민보사위원회

1. 修 正 理 由

- 숙박업, 목욕장업, 유기장업등은 비생산성과 영업허가(신고)를 난립을 억제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중 제3안을 선택하고 기타 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은 구청제출 원안과 같이 함.

2. 主 要 骨 子

- 숙박업, 목욕장업, 유기장업 등의 신규허가(신고)의 수수료는 '87년부터 '95년까지의 소매물가 상승율 평균치 53.8%를 적용함.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 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 업종별 수수료(안)

제 정 안				수 정 안	
구분 종별	업 태 별	신규허가(신고)	변경허가(신고)	신규허가(신고)	변경허가(신고)
숙박업	호텔업	12만원	6만원	184,560원	92,280원
	콘도미니엄업	12만원	6만원	184,560원	92,280원
	여관업	4만원	2만원	61,520원	30,760원
	여인숙업	1만원	5천원	15,380원	7,690원
목욕장업	공동탕업	1만2천원	6천원	18,450원	9,230원
	가족탕업	1만2천원	6천원	18,450원	9,230원
	한증막업	6만원	3만원	18,450원	9,230원
	사우나탕업	6만원	3만원	92,280원	46,140원
	터키탕업	6만원	3만원	92,280원	46,140원
	복합목욕탕업	6만원	3만원	92,280원	46,140원
유기장업	컴퓨터게임장업	3만원	1만5천원	46,140원	23,070원
	종합유원시설업	6만원	3만원	92,280원	46,140원
	기타유기장업	3만원	1만5천원	46,140원	23,070원
이 미 용 업		1만2천원	1만2천원	제정안과 같음	제정안과 같음
위생관리용역업		7천원	3천5백원	제정안과 같음	제정안과 같음
세탁업		7천원	3천5백원	제정안과 같음	제정안과 같음
위생처리업		7천원	3천5백원	제정안과 같음	제정안과 같음
세척제제조업		2만원	1만원	제정안과 같음	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의안
번호

102

제출년월일 : 1996. 12. 9.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현재 숙박업의 21종 영업허가(신고) 수수료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 수입 증지로 징수하고 있으나, 96. 8. 20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97. 1. 1부터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로 징수하도록 변경되어 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 징수조례(안)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제정근거

- 공중위생법 제40조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수수료)

3. 수수료율 조정 대상

- 현행 숙박업의 21종 허가(신고) 수수료 : 87. 3. 18 조정

4. 주요내용

- 공중위생법 영업허가 신고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 대상 및 금액을 정함(안 제2조)
- 공중위생법 영업허가 신고등에 징수하는 수수료는 당해 자치구 수입증지로 납부함.

5. 수수료율 조정에 대한 검토 의견

- “제 1 안”이 물가상승 억제효과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가장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 | |
|-------------------------------|
| 제 1 안 : 현행대로 |
| 제 2 안 : 평균조정율 24.7%(도매 물가지수) |
| 제 3 안 : 평균조정율 53.8%(소비자 물가지수) |

6. 시 행 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7. 참고사항

- 예산조치 및 합의 : 필요없음

8. 조 례 안

- 별 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위생업”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위생접객업·위생관련영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을 말한다.

제3조(수수료 부과기준) 법 제40조 제1호에 의한 영업·제조업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법 제40조 제2호에 의한 변경허가, 법 제40조 제3호에 의한 변경신고, 법 제40조 제4호에 의한 양수등 신고, 법 제40조 제5호의 면허에 대한 수수료 징수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납부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또는 신고 등의 수수료는 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공중위생업 영업등을 할 경우에는 허가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 업종별 수수료(안)

구분 종별	업 태 별	신규허가(신고)	변경허가(신고)
숙 박 업	호 텔 업	12만원	6만원
	콘 도 미 니 엄 업	12만원	6만원
	여 관 업	4만원	2만원
	여 인 숙 업	1만원	5천원
목 욕 장 업	공 동 탕 업	1만2천원	6천원
	가 족 탕 업	1만2천원	6천원
	한 중 막 업	1만2천원	6천원
	사 우 나 탕 업	6만원	3만원
	터 키 탕 업	6만원	3만원
	복 합 목 욕 탕 업	6만원	3만원
유 기 장 업	컴 퓨 터 게 임 장 업	3만원	1만5천원
	종 합 유 원 시 설 업	6만원	3만원
	기 타 유 기 장 업	3만원	1만5천원
이 · 미 용 업		1만2천원	6천원
위 생 관 리 용 역 업		7천원	3천오백원
세 탁 업		7천원	3천오백원
위 생 처 리 업		7천원	3천오백원
세 척 제 제 조 업		2만원	1만원
기 타 위 생 용 품 제 조 업		7천원	3천오백원
장 난 감 제 조 업		7천원	3천오백원
기 타	○ 영업 양수신고 수수료는 신규 영업허가(신고)수수료에 준함. ○ 이·미용사 신규 면허 : 3천원 ○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 2천원		